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20.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13. 정혜경 의원 외 4명

나. 회부일자: 2020. 5. 13.

다. 상정일자: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5.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경 의원

가. 제안이유

조례의 상위법 제명 개정과 조문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근거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주요내용

1)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 1. 2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을 반영(안 제1조)

2) 2018. 11.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른 조문 개정(안 제2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준호)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으로 법령의 정합성을 이루기 위함.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1조의 상위법령 제명변경은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령 체계를 맞추고자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또한, 안 제2조의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정합성을 갖추었음.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